



선 람	기관의 장

제 1128 호

2013년 9월 6일 금요일

훈 령

- 훈령 제2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 2

공 고

- 공고 제2013- 1294호 차량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5
- 공고 제2013- 1295호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6
- 공고 제2013- 1299호 2013.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9
- 공고 제2013- 1301호 장기 미 반환차량 공시송달 14
- 공고 제2013- 1306호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16
- 공고 제2013- 1307호 공인 신조 18
- 공고 제2013- 13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사업 보상계획 열람 20
- 공고 제2013- 13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
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 공고 제2013- 13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 남동구지식정보센터
공고 제2013- 6호 소래역사관 2013년도 하반기 유물확충 사업 36

고 시

- 고시 제2013- 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40
- 고시 제2013- 86호 도로명주소 폐지 41
- 고시 제2013- 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폐
지) 및 지형도면 고시 43
- 고시 제2013- 89호 도시관리계획(수현구역, 도림1구역 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5
- 고시 제2013- 90호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 47

회 람								
----------------	--	--	--	--	--	--	--	--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9월 6일

남동구 훈령 제2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을 “제2호 및 단순 노무성 용역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 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용역심의 대상) ①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 모든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절차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2. 용역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3.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용역의 경우
4. 관련규정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의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심의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②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용역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은”을 “기획예산실장은 예산부서의 실무심의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현 규정상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대상 용역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효율적인 용역업무 관리를 위해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용역사업 관리 및 사전심의 대상 조정
 - 단순 노무성 용역 제외 (제2조제3호)
 -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 사업 제외 (제4조제2항)
 - 심의회 및 예산부서 실무심의 대상 정비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
 - 관리번호 부여 시 예산부서 실무심의 명문화 (제7조제1항)
- 오기 사항 정정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1항)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94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2013. 9. 2. 등기우편물 반송)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3. 9. 16.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저당)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9. 2. ~ 9. 16.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자동차등록번호	성 명	사용본거지			
경기31거7005	이*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동차 가압류 공문번호:2005카단1307 압류일자:2005.01.21.	김*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57번길 20, 102호(지동)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032-453-2941)

2013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1295호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남동구 소재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 기준(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최종 검토 및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청취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첨부파일 참고)

- 시지정문화재(1개소)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범위
기념물 제63호	이승훈 묘	남동구 장수동 산132-1	문화재구역 외곽 반경 500m

다.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문화체육과), 장수서창동 및 만수4동 주민센터 도면 비치

라. 공고기간 : 2013. 9. 3 ~ 2013. 9. 17(15일간)

마. 특기사항

- 동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 9. 17일까지 남동구청 문화체육과로 의견서(서면제출/ 성명, 연락처,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장소 : (우)406-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재 담당자
- 기타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백현지 ☎032-453-2134)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전화번호 :
5. 의견내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299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랐

가. 기 간 : 2013년 9월 3일 ~ 9월 27일

나.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및 남동구청 홈페이지

다.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2.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3년 9월 3일 ~ 9월 27일

나.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다.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마.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 기간이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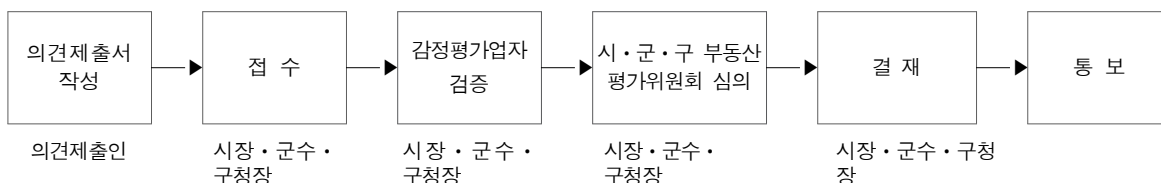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13년 7월기준 열람지가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1	구월동 571-1	305,000	95	장수동 395-0	665,000	189	수산동 366-7	420,000
2	구월동 571-4	270,000	96	장수동 395-1	174,000	190	수산동 367-0	748,000
3	구월동 635-0	602,000	97	장수동 395-3	565,000	191	수산동 367-2	252,000
4	구월동 635-10	589,000	98	장수동 395-4	174,000	192	수산동 377-3	89,200
5	구월동 635-14	589,000	99	장수동 395-5	174,000	193	수산동 377-11	360,000
6	구월동 635-19	521,000	100	장수동 396-2	174,000	194	도림동 21-9	239,000
7	구월동 635-20	501,000	101	장수동 396-5	174,000	195	도림동 22-5	239,000
8	구월동 635-21	501,000	102	장수동 397-2	174,000	196	도림동 22-6	239,000
9	구월동 636-1	229,000	103	장수동 397-3	147,000	197	도림동 30-16	239,000
10	구월동 636-2	307,000	104	장수동 397-8	174,000	198	도림동 30-17	239,000
11	구월동 638-0	233,000	105	장수동 397-9	174,000	199	도림동 52-4	190,000
12	구월동 638-1	607,000	106	장수동 410-1	71,400	200	도림동 52-8	190,000
13	구월동 638-2	278,000	107	장수동 410-2	71,400	201	도림동 101-6	239,000
14	구월동 638-4	487,000	108	장수동 410-3	71,400	202	도림동 102-8	239,000
15	구월동 638-5	307,000	109	장수동 410-8	71,400	203	도림동 110-20	239,000
16	구월동 638-6	246,000	110	장수동 410-9	71,400	204	도림동 114-1	302,000
17	구월동 638-7	516,000	111	장수동 410-10	71,400	205	도림동 205-3	239,000
18	구월동 638-8	516,000	112	장수동 410-11	71,400	206	도림동 327-0	191,000
19	구월동 638-9	401,000	113	장수동 410-12	71,400	207	도림동 327-3	191,000
20	구월동 638-10	341,000	114	장수동 410-13	71,400	208	도림동 360-3	279,000
21	구월동 642-0	246,000	115	장수동 410-14	71,400	209	도림동 360-11	212,000
22	구월동 643-2	252,000	116	장수동 751-0	123,000	210	도림동 413-12	371,000
23	구월동 643-3	467,000	117	장수동 751-7	174,000	211	도림동 413-25	371,000
24	구월동 643-6	288,000	118	장수동 751-8	174,000	212	도림동 423-3	181,000
25	구월동 643-7	288,000	119	장수동 751-9	150,000	213	도림동 431-0	203,000
26	구월동 643-17	333,000	120	장수동 751-10	71,400	214	도림동 437-0	322,000
27	구월동 643-18	467,000	121	장수동 751-11	71,400	215	도림동 437-8	319,000
28	구월동 643-19	250,000	122	장수동 751-12	71,400	216	도림동 437-21	319,000
29	구월동 643-20	250,000	123	장수동 775-4	852,000	217	도림동 437-44	271,000
30	구월동 644-1	704,000	124	장수동 775-15	917,000	218	도림동 465-3	148,000
31	구월동 644-3	259,000	125	장수동산 59-0	30,400	219	도림동 465-4	233,000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32	구월동 644-5	68,700	126	장수동산 59-4	22,600	220	도림동 465-5	206,000
33	구월동 644-6	598,000	127	서창동 8-0	174,000	221	도림동 503-0	228,000
34	구월동 644-7	112,000	128	서창동 8-3	174,000	222	도림동 503-1	202,000
35	구월동 644-8	226,000	129	서창동 191-3	180,000	223	도림동 503-2	66,700
36	구월동 646-3	246,000	130	서창동 440-0	180,000	224	도림동 675-5	853,000
37	구월동 646-4	246,000	131	운연동 58-9	181,000	225	도림동 675-8	302,000
38	구월동 660-2	246,000	132	운연동 58-14	181,000	226	도림동 676-6	970,000
39	구월동 660-10	246,000	133	운연동 136-2	222,000	227	논현동 5-0	188,000
40	구월동 1068-0	78,900	134	운연동 139-0	160,000	228	논현동 21-16	50,500
41	구월동 1068-26	89,800	135	운연동 196-2	163,000	229	논현동 21-34	50,500
42	구월동 1068-27	275,000	136	운연동 196-21	163,000	230	논현동 21-35	50,500
43	구월동 1115-0	2,400,000	137	운연동 230-1	166,000	231	논현동 38-1	667,000
44	구월동 1164-5	1,130,000	138	운연동 230-2	193,000	232	논현동 38-8	567,000
45	구월동 1208-14	946,000	139	운연동 230-3	195,000	233	논현동 40-0	667,000
46	구월동 1224-13	945,000	140	운연동 239-0	157,000	234	논현동 40-7	567,000
47	간석동 1-730	697,000	141	운연동 300-12	610,000	235	논현동 66-5	2,470,000
48	간석동 1-812	29,300	142	운연동 300-13	46,600	236	논현동 66-19	611,000
49	간석동 1-813	576,000	143	운연동 300-16	46,600	237	논현동 66-24	2,550,000
50	간석동 73-8	1,650,000	144	운연동 349-4	167,000	238	논현동 66-81	491,000
51	간석동 73-33	594,000	145	운연동 349-5	362,000	239	논현동 66-83	379,000
52	간석동 170-3	1,930,000	146	운연동 350-9	167,000	240	논현동 436-7	1,040,000
53	간석동 170-27	1,340,000	147	운연동 350-12	362,000	241	논현동 436-11	1,040,000
54	간석동 590-0	756,000	148	운연동 459-1	143,000	242	논현동 442-34	805,000
55	간석동 593-0	796,000	149	운연동 459-40	143,000	243	논현동 442-83	970,000
56	간석동 920-4	808,000	150	운연동 484-0	141,000	244	논현동 443-0	941,000
57	간석동 920-6	876,000	151	운연동 484-4	148,000	245	논현동 443-7	1,100,000
58	만수동 1-430	20,900	152	남촌동 12-1	230,000	246	논현동산 84-6	40,200
59	만수동 1-447	22,200	153	남촌동 12-7	76,000	247	논현동산 84-8	40,200
60	만수동 5-78	1,150,000	154	남촌동 95-3	249,000	248	고잔동 67-5	565,000
61	만수동 80-899	741,000	155	남촌동 96-4	368,000	249	고잔동 67-7	565,000
62	만수동 111-92	932,000	156	남촌동 96-10	368,000	250	고잔동 120-5	1,080,000
63	만수동 111-251	1,130,000	157	남촌동 242-0	368,000	251	고잔동 163-5	1,890,000
64	만수동 111-260	1,130,000	158	남촌동 357-1	175,000	252	고잔동 163-31	1,890,000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No	토지소재지	열람지가(원/㎡)
65	만수동 111-515	325,000	159	남촌동 403-1	319,000	253	고잔동 179-2	851,000
66	만수동 111-516	325,000	160	남촌동 403-2	230,000	254	고잔동 179-11	835,000
67	만수동 372-1	475,000	161	남촌동 405-0	242,000	255	고잔동 179-12	835,000
68	만수동 372-3	475,000	162	남촌동 405-1	76,000	256	고잔동 190-0	976,000
69	만수동 373-9	475,000	163	남촌동 405-2	76,000	257	고잔동 190-2	934,000
70	만수동 373-10	475,000	164	남촌동 405-3	242,000	258	고잔동 212-5	1,020,000
71	만수동 928-16	997,000	165	남촌동 406-1	244,000	259	고잔동 212-15	990,000
72	만수동 928-19	997,000	166	남촌동 406-25	76,000	260	고잔동 239-2	788,000
73	장수동 29-1	149,000	167	남촌동 441-2	247,000	261	고잔동 239-11	788,000
74	장수동 29-2	148,000	168	남촌동 441-4	247,000	262	고잔동 246-103	1,000,000
75	장수동 36-3	163,000	169	남촌동 441-5	247,000	263	고잔동 257-4	864,000
76	장수동 36-6	148,000	170	남촌동 441-6	247,000	264	고잔동 257-102	864,000
77	장수동 36-7	148,000	171	남촌동 463-0	254,000	265	고잔동 298-1	1,100,000
78	장수동 104-5	135,000	172	남촌동 463-4	233,000	266	고잔동 298-13	919,000
79	장수동 150-0	156,000	173	남촌동 480-1	175,000	267	고잔동 300-2	727,000
80	장수동 150-1	156,000	174	남촌동 482-1	175,000	268	고잔동 350-6	950,000
81	장수동 150-2	156,000	175	남촌동 494-7	289,000	269	고잔동 478-4	1,000,000
82	장수동 150-3	135,000	176	남촌동 510-16	179,000	270	고잔동 478-5	950,000
83	장수동 368-3	699,000	177	남촌동 510-118	202,000	271	고잔동 478-14	897,000
84	장수동 368-5	800,000	178	남촌동 510-236	184,000	272	고잔동 478-15	950,000
85	장수동 368-6	800,000	179	남촌동 620-5	990,000	273	고잔동 478-16	808,000
86	장수동 368-16	680,000	180	남촌동 620-11	990,000	274	고잔동 535-1	809,000
87	장수동 386-2	71,400	181	남촌동 620-12	1,040,000	275	고잔동 535-2	809,000
88	장수동 386-12	71,400	182	남촌동 630-3	990,000	276	고잔동 535-10	809,000
89	장수동 388-2	174,000	183	남촌동 630-12	990,000	277	고잔동 535-11	809,000
90	장수동 388-7	112,000	184	수산동 94-13	663,000	278	고잔동 535-12	809,000
91	장수동 388-16	84,900	185	수산동 94-65	81,000	279	고잔동 727-14	939,000
92	장수동 388-17	77,600	186	수산동 113-0	244,000	280	고잔동 732-12	921,000
93	장수동 391-1	851,000	187	수산동 113-1	216,000	281	고잔동 732-19	891,000
94	장수동 391-17	851,000	188	수산동 366-0	539,0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301호

장기 미 반환 차량 인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위반으로 견인되어 우리구 견인보관소에 장기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인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별첨”
4. 공시송달 공고 기간 : 2013. 9. 3. ~ 9. 17(15일간)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가.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 나.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으로 전화, 방문, 팩스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453-2890, FAX 032-453-2899)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순번	차 량 번 호	차 종	성 명	차 적 지 주 소
1	16가1440	옵티마	(주)신나라자동차	광주 광산 하남산단1번로108(흑석동)
2	88가5547	코란도	(주)드림사무웨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67번길30(춘의동)
3	80어6563	카니발6밴	청호중기㈜	서울은평구통일로641(녹번동)
4	경기33가7332	매그너스	조순옥외1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205번길14-16(태평동)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13 - 1306호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에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채용인원 및 업무내용

가. 채용분야 :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인력

나. 채용인원 : 총 4명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총4명	2명	2013.10.01 ~ 2014.01.31	09:00 ~ 18:00 주5일 근무 (월~금)
	1명	2013.10.01 ~ 2014.03.31	
	1명(*)	2013.10.01 ~ 2014.03.31	

다. 근무지역 : 남동구 세무과 및 관내 주택 방문조사

라. 업무내용 : 관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전산입력

마. 2014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1명(*)은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2. 채용요건

가. 공고일 기준 남동구 관내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자

나.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자(엑셀, 한글문서 등)

다. 관내주택출장조사가 가능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자

라. 「인천광역시남동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주택특성조사등 기타조사 유경험자 우대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나. 일급 39,000원(주차수당,연차수당,처우개선비 별도, 4대보험 포함)

다. 복무규정 : 남동구 취업규칙 준용

4. 서류접수 및 합격자 통보

가. 공고기간 : 2013.09.06(금) ~ 2013.09.13(금)

나. 접수기간 : 2013.09.09(월) ~ 2013.09.13(금) 09:00~18:00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직접 방문접수

※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모집인원의 3배수(12명)로 마감함

라.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서류심사 : 2013. 09. 17(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 2013. 09. 24(화) ※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사. 합격통보 : 2013. 09. 25(수)

아. 채용일 : 2013. 10. 01(화)

※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453-2412~3)로 문의 바람.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응 시 자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컴퓨터활용능력(엑셀)상,중,하 중 에서 이력서에 별도 기재
최 종 합 격 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신원조사용) 2부 ·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307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인 신조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 공인의 최초사용일(공인폐기일) : 2013. 9. 5
3.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 신조(8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장수서창동통합민원1)-종		한글전서체 2.4cm×2.4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장수서창동통합민원1)-형		한글전서체 2.4cm×2.4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장수서창동통합민원2)-종		한글전서체 2.4cm×2.4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장수서창동통합민원2)-형		한글전서체 2.4cm×2.4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장수서창동장인 (장수서창동통합민원1)-종		한글전서체 2.1 cm × 2.1 cm	
신 조 공 인	장수서창동장인 (장수서창동통합민원1)-횡		한글전서체 2.1 cm × 2.1 cm	
신 조 공 인	장수서창동장인 (장수서창동통합민원 2)-종		한글전서체 2.1 cm × 2.1 cm	
신 조 공 인	장수서창동장인 (장수서창동통합민원 2)-횡		한글전서체 2.1 cm × 2.1 cm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311호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3-3호선, 소1-28호선)
 - 나. 명 칭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소로3-3호선 B=6.0m, L=190.0m
 - 나. 소로1-28호선 B=10~17.0m, L=66.0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44-1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13. 11월부터
6. 보상금 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가. 토지보상 : 구월동 643-19번지 외 13
 - 나.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3. 9. 5 ~ 9. 20(15일간)

11. 기타사항

-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나.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0)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조서(1)

공사명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구월동	609	도	1,147	50	공	인천광역시남동구				
2	구월동	643-18	과	4	4	공	인천광역시남동구				
3	구월동	643-19	과	4	4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4번길 41-28, 301호(구월동)				
4	구월동	643-20	과	664	664	황**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475번길 18, 16동 205호(학익동,신동아아파트)				
5	구월동	644-8	목	92	92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1-2				
6	구월동	644-7	도	149	149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월가 102동 301호				
7	구월동	636-2	전	134	134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4 이삭아파트 101동 501호				
8	구월동	644-6	대	6	6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월가 102동 301호				
9	구월동	643-17	전	15	15	문**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7동 711호				
10	구월동	638-5	과	256	256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102동 505호(만수동,삼익세라믹아파트)				
11	구월동	638-8	목	12	12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102동 505호(만수동,삼익세라믹아파트)				
12	구월동	638-10	창	105	105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102동 505호(만수동,삼익세라믹아파트)				
소 계				2,588	1,491						

☐ 용지조서(2)

공사명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3	구월동	638-7	목	34	34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102동 505호(만수동,삼익세라믹아파트)				
14	구월동	1068-27	도	210	210	국	재무부				
15	구월동	635-19	전	90	90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16	구월동	635-20	전	59	59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17	구월동	635-21	전	106	106	기쁜소식 인천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7				
18	구월동	1068-6	도	534	48	공	인천광역시남동구				
소 계				1,033	547						
합 계				3,621	2,038						

☐ 지장물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용도	구 조	단위	수량	물 건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구월동	643-20	수 목	소나무	주	10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475번길 18, 16동 205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황**
2	구월동	644-8	담 장	디자인웬스	m	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수 목	감나무	주	1		
3	구월동	644-7	정화조		개	1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외2인
			수 목	감나무	주	1		
			담 장	EGI웬스	m	40.0		
4	구월동	644-1	담 장	블록	m	8.5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 301호	김**외2인
			담 장	메쉬웬스	m	22.5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5	구월동	636-2	수 목	유실수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4 이삭아파트 101동 501호	이**
			수 목	배나무	주	5		
6	구월동	638-5	수 목	배나무	주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102동 505호(만수동,삼익세라믹아파트)	문**
7	구월동	638-10	건 물	블럭슬라브	m ²	1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0-30, 102동 505호(만수동,삼익세라믹아파트)	문**
			대 문	가설판넬	개	2		
8	구월동	635-19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대 문	철제메쉬	개	1		
			담 장	철제메쉬	m	50.7		
			대 문	철제메쉬	개	1		
			옹 벽	석축	m	7.0		
			수 목	은행나무	개	1		
9	구월동	635-20	수 목	참나무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1인
			건 물	콘크리트	m ²	3.7		
			수 목	조경수	주	14		
			수 목	채소	주	30		
			수 목	소나무	주	5		
			대 문	철제메쉬	개	1		
10	구월동	655-1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수 목	배나무	주	8		
11	구월동	655-2	수 목	은행나무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수 목	단풍나무	주	2		
			수 목	사철나무	주	5		
12	구월동	635-21	옹 벽	보강토	m	2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7	기쁜소식 인천교회
13	구월동	655-4	건 물	콘크리트	m ²	47.6	인천시 남구 구월동 349	고**
14	구월동	1068-6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
			담 장	목재웬스	m	26.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3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의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규정 정비 (안 제15조)
 - 나.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용자 기준 신설 (안 제15조의2)
 - 다. 통합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금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신설 (안 제18조의2)
 - 라. 통합관리기금 일몰제 적용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설정)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제16조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6,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나. 비용추계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170(2012.11.16.)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기금 및 통합기금관리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규정 정비 (안 제15조)
- 통합관리기금의 재정용자 기준 신설 (안 제15조의2)
- 통합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금위원의 제척·기파·회피 사항 신설 (안 제18조의2)
- 통합관리기금 일몰제 적용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설정)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

1.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2.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그 밖의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그 밖의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통합기금 용자기준)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용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합기금의 용도)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 1.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2.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그 밖의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그 밖의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15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 1.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2.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그 밖의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그 밖의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통합기금 용자기준)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용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
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3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3년 조직개편으로 국이 신설되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개편함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민관협의회의 구성을 민·관 동수 14명 이내로 맞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주민참여민관협의회의 구성 인원 민관위원수 조정 (안 제24조제1항)
 - 당초 민관동수 12명 이내 ⇒ 변경 민관동수 14명 이내
 - 나. 협의회 민관동수를 맞추기 위해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 2명 위촉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4조제2항)
 - 다.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조항 신설 (안 제24조제3항)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5,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2013년 조직개편으로 국이 신설되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로 개편함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민관협의회의 구성을 민·관 동수 14명 이내로 맞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민관협의회의 구성 인원 민관위원수 조정 (안 제24조제1항)
 - 당초 민관동수 12명 이내 ⇒ 변경 민관동수 14명 이내
- 협의회의 민관동수를 맞추기 위해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 2명 위촉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4조제2항)
-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조항 신설 (안 제24조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2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이 2명을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촉된 당해연도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민관동수로 <u>12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 ----- ----- <u>14명</u> ---- -----.
② <u>협회의 위원은 구청장, 부구 청장, 국장, 보건소장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당 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	② <u>협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청 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회의 위원장이 2명을 추천하여 구 청장이 위촉한다.</u>
<u><신 설></u>	<u>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 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촉된 당해연도 에 한한다.</u>
<u>③ ~ ⑥ (생략)</u>	<u>④ ~ ⑦ (현행과 같음)</u>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식정보센터 공고 2013-6호

2013년도 하반기 소래역사관 유물확충 사업 공고

소래역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물 확충 계획이 있음을 알립니다.

2013년 9월 3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지식정보센터장

1. 구입 대상 유물

가. 소래지역(갯벌, 포구, 염전) 관련 자료

- 각종 어구 및 염업도구 등 관련 자료
- 소래갯벌, 포구, 염전의 사진 등 자료
- 기타 소래지역과 관련 있는 자료 등

나. 수인선 관련 자료

- 열차 승차권 및 열차 시간표 등의 자료
- 수인선 관련 기념품 및 관광엽서, 팸플릿, 사진 자료
- 기타 수인선과 관련 있는 자료 등

다. 서해안 풍어제 관련 자료

- 서해안 풍어제 관련 자료
- 남촌동, 장수동 등 남동구 기타 마을당제 관련 자료

2. 참가자격

- 소장유물의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중증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단체
- ※ 도굴품, 장물, 위조품 등의 불법유물은 신청불가

3. 신청방법

가.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소래역사관 학예실](#)
- 매매 희망 시 유물·자료 매도신청서와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를 작성한 후, 유물의 모습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3"×5" 규격의 칼라사진 1매를 매도

- 대상 유물·자료 명세서에 첨부하여 소래역사관 학예실로 2013년 10월 11일
까지 우편 송부 및 직접 접수(우편접수는 2013년 10월 11일 도착분에 한함)
- 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우편접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와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와 함께 매도희망유물이미지의
디지털 파일을 별도로 압축하여 choonsiks@korea.kr 로 접수
- 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실물 접수 : 평가대상 선정 여부는 학
예실을 통하여 개별연락을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신청기간 : 2013년 9월 24일(화) ~ 10월 11일(금)

월요일은 역사관 휴관일이므로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

5. 신청장소 : 소래역사관 학예실 (담당자 : 김춘식 학예연구사, ☎032-453-5632)

6. 신청 시 필요서류

- 가. 유물·자료 매도신청서(역사관 소정양식 다운로드)
- 나.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역사관 소정양식 다운로드, 사진 1매 부착)
- 다. 매도신청자 신분증 사본
- 라.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문화재매매업 종사자만 해당)

7. 기타사항

- 가. 매매 희망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나. 사진자료의 매도희망 시 원본 필름까지 접수를 요망함.
- 다. 구입여부는 본 역사관의 소장품 구입 절차에 따라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소장자에게 통보하여 반환함.(심의 결과에 관
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라. 유물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에 유물·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역사관
으로 이전됨.
- 마. 최종구입대상유물로 결정된 유물자료가 도굴, 장물 등으로 밝혀지거나 「문
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의 발견 시 법적책임은 매도신청자에게 있음.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

[접수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시 대	
소 장 자		요 구 액	
소장경위	- 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기술		
내 용	- 주요 특징 및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사 진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번호	명 칭	수량	시 대	재 질	출 처	크 기	희망가격
1							
2							
3							
4							
5							
6							
7							
8							
9							
10							
계							

1. 위와 같이 유물·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만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자료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식정보센터장 귀하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60-2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간석로15번길 썬터	소공원	남동구 간석3동 60-2번지 일원	-	△ 246.3	246.3	-	

2)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내 용	사 유
-	간석로15번길 썬터	○ 공원(소공원) 신규 결정 A=246.3㎡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결정

- 지형도면 : “별 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8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377번길 17외 8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변경 등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나.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377번길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8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82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7-12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8-4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8-5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8-12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37번길	7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1-4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82번길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51-5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63-16	2013.09.0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폐지)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의 결정(변경)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폐지)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	20	보조 간선	1,360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인고제55호 (1991.4.15.)	
변경	중로	1	10	20 ~33	보조 간선	1,380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3	74	6	국지	21	소1-7	간석동 76-3	일반		경기도 고시 제79-119호 (1979.4.13.)	
변경	소로	1	15	10	국지	170	대1-1	소1-7	일반			노선 연장
폐지	소로	3	31	6	국지	120	소3-28	소3-73			경기도 고시 제77-227호 (1977.10.11.)	노선 폐지

2) 도로결정(변경, 폐지)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중로1-10	중로1-10	• 위치 : 장수동 380번지 일원 • 일부구간 확장, 선형변경 - B=20m → 20~33m, - L=1,360m → 1,380m (증20m)	• 기 개설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과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고자 도로폭원 조정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3-74	소로1-가	• 위치 : 간석동 67-10번지 일원 • 폭원 및 연장 확장, 선형변경 - B=6m → 10m(증4m), - L=20m → 170m(증150m)	• 기 개설된 현황도로를 수용하여 도로 선형 변경
폐지	소로3-31	-	• 위치 : 간석동 58-1번지 일원 • 노선폐지 - B=6m, L=120m(감120m)	• 중복된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에 따른 도로의 폐지

3. 지형(결정)도면 : “별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89호

도시관리계획(수현구역, 도림1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수현구역, 도림1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수현구역, 도림1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수현구역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	20	보조 간선	1,360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인고제55호 (1991.4.15.)	
변경	중로	1	10	20 ~33	보조 간선	1,380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중로1-10	중로1-10	- 일부구간 확장, 선형변경 - B=20m → 20~33m, - L=1,360m → 1,380m(증20m)	기 개설된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과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폭원 및 일부 선형변경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도림1구역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215	소2-1 도림동209-1	소3-1 도림동산16-1	일반		인고제98호 (2006.6.5.)	
변경	소로	3	12	6	국지 도로	215	소2-1 도림동209-1	소3-1 도림동산16-1	일반		인고제98호 (2006.6.5.)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소로3-12	소로3-12	- 일부구간 선형변경 - B=6m, L=215m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개선을 위한 일부구간 변경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지형(결정)도면 : “별첨”(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90호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 사항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지구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사회복지시설 : 변 경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사 회 복지시설	서창동 571-5	200.0	-	200.0	남동구고시 2005-48 (2005.10.25)	
신설	2	사 회 복지시설	서창동 555-13번지외 1	-	증)1,111.2	1,111.2		
	계	2개소		200.0	증)1,111.2	1,311.2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위 치 : 서창동 555-13번지 외 1 면 적 : 1,111.2㎡	· 서창구역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가구 및 획지조서(B, D용도) :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확정지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확정지번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	10	4,685.8	12	509.5	555-12	B	10	3,574.6	12	-	-
			13	601.7	555-13				13	-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도 (B, D) : 변 경

【 기 정 】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6 7 8 10 11 12 26(D용도) 38(D용도) 53 54 55 56 58 59 60	전체(1~4,5-1,5-2,6~10) 3 전체(1~8,9-1~3,10,11,12) 1~3,5,6-1~2,7~13 1~3,6~9,10-1,10-2,11~14 1~9,11,12-1,12-2,13 전체(1-1~7,2,3) 전체(1-1,1-2) 2~4,5-1,5-2,6,7 2~5 전체(1~3,4-1,4-2,5~7,8-1,8-2,9,10-1,10-2) 1-2,4,5 전체(1~8,10~12) 전체(1~7) 전체(1,2,3-1~4,6,7)	용 도	B · 별표 1의 B
			D · 별표 1의 D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B · 200%이하
			D · 150%이하
		높 이	B · 4층이하
			D · 3층이하
		형 태	· 별표 2의 B, D
		배 치	· 별표 3의 B, D
		색 채	-
		건축선	· D 용도
			중로2-197호선변 → 1m
			중로1-169호선변 → 2m
			중로3-115호선변 → 2m

【 변 경 】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6 7 8 10 11 12 26(D용도) 38(D용도) 53 54 55 56 58 59 60	전체(1~4,5-1,5-2,6~10) 3 전체(1~8,9-1~3,10,11,12) 1~3,5,6-1~2,7~11 1~3,6~9,10-1,10-2,11~14 1~9,11,12-1,12-2,13 전체(1-1~7,2,3) 전체(1-1,1-2) 2~4,5-1,5-2,6,7 2~5 전체(1~3,4-1,4-2,5~7,8-1,8-2,9,10-1,10-2) 1-2,4,5 전체(1~8,10~12) 전체(1~7) 전체(1,2,3-1~4,6,7)	용 도	B · 별표 1의 B
		D	· 별표 1의 D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B · 200%이하
		D	· 150%이하
		높 이	B · 4층이하
		D	· 3층이하
		형 태	· 별표 2의 B, D
		배 치	· 별표 3의 B, D
		색 채	-
		건축선	·D 용도 중로2-197호선변 → 1m 중로1-169호선변 → 2m 중로3-115호선변 → 2m

2) 사회복지시설 : 변 경

【 기 정 】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48	5	용 도	·노유자시설중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건폐율	·경로당 60%이하
		용적률	·경로당 200%이하
		높 이	·경로당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

【 변 경 】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48	5	용 도	·노유자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10	12, 13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 경

【 기 정 】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6, 7, 8, 10, 11 12, 26(D용도) 38(D용도) 53, 54, 55, 56, 58, 59, 60	6,7(3),8,10(4제외),11(4제외),12(10제외) 26(D용도), 38(D용도) 53(1제외), 54(1제외), 55, 56(1-1제외), 58, 59, 60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B, D)	·별표4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B, D ·별표5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42, 43, 45, 47 48, 49, 50, 51 52	42, 43(3제외), 45, 47, 48(5제외), 49, 50(1제외), 51(7.8제외), 52(1,7제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용도(B-1)	·별표4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B-1 ·별표5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1(3), 2, 3, 4, 5, 9 39, 40, 41	1(3), 2, 3, 4, 5(4제외), 9, 39(7제외) 40(4제외), 41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A)	·별표4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A ·별표5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1(1,2), 15, 24, 44	1(1,2), 15(1,15제외), 24, 44 공동주택용도(B-2,C)	·별표4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B-2, C ·별표5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별표6의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 변 경 】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6, 7, 8, 10, 11 12, 26(D용도) 38(D용도) 53, 54, 55, 56, 58, 59, 60	6,7(3),8,10(4,12,13제외),11(4제외),12(10제외) 26(D용도), 38(D용도) 53(1제외), 54(1제외), 55, 56(1-1제외), 58, 59, 60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B, D)	·별표4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B, D ·별표5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42, 43, 45, 47 48, 49, 50, 51 52	42, 43(3제외), 45, 47, 48(5제외), 49, 50(1제외), 51(7,8제외), 52(1,7제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용도(B-1)	·별표4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B-1 ·별표5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1(3), 2, 3, 4, 5, 9 39, 40, 41	1(3), 2, 3, 4, 5(4제외), 9, 39(7제외), 40(4제외), 41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A)	·별표4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A ·별표5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1(1,2), 15, 24, 44	1(1,2), 15(1,15제외), 24, 44 공동주택용도(B-2,C)	·별표4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B-2, C ·별표5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별표6의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 변 경

① G용도 : 변 경

【 기 정 】

구 분	G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 용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경로당)

【 변 경 】

구 분	G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 용 용 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 노유자시설

3.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